

1.약관명: 대출거래약정서(주택도시기금대출 : 가계용)

2.시행일: 2024.4.26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0조 기한연장</p> <p>④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한대출 기한연장 시 최초 취급된 대한대출금의 25% 이상 상환하기로 하되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</p> <p>다만, <u>대출기간(단,2회차 연장시부터는 직전연장기간) 중 최초 취급 대한대출금의 25% 이상 상환한 경우 기한연장 시 25% 이상 상환한 것으로 봅니다.</u></p> <p><신설></p> <p>(이하생략)</p>	<p>제10조 기한연장</p> <p>④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한대출 기한연장 시 최초 취급된 대한대출금의 25% 이상 상환하기로 하되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</p> <p>다만, <u>기한연장 시 최초 취급된 대한대출금의 25% 이상을 대출기간(단, 2회차 연장시부터는 직전 기한연장 기간) 중 상환한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.</u></p> <p>단</p> <p>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(창업) 청년 우대금리 요건 충족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.</p>	<p>청년버팀목대출대상자 (중소기업취업(창업)청년) 추가에따른 변경</p>